

자료 10-08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정책토론회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2010. 11

안종석

박명호

고 선

구자은

## 개 요

□ 주 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 일 시 2010. 11. 2(화) 14:00~16:00

□ 장 소 국민일보사옥 1층 메트로홀

□ 진행순서

14:00~14:15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인사말 김석원 (사)신용정보협회 회장

14:15~14:30 격려사

14:30~15:45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발표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 토론자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동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협회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순)

15:45~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

## 목 차

I. 서 론 .....	1
II.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	3
III. 체납징수 민간위탁 해외사례 .....	9
IV.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15
V. 민간부문의 체납징수 업무 수행능력 .....	20
VI. 민간위탁제도 도입 방안 .....	23
VII. 결 론 .....	29

## 표 목 차

<표 II-1>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추이 비교 : 지방세 VS 국세 .....	3
<표 II-2>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정리 체납액 현황 .....	4
<표 II-3> 2008년 지역별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 현황 .....	6
<표 II-4>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 불납결손액 현황 .....	7
<표 II-5> 2008년 지역별 지방세 불납결손액 현황 .....	8
<표 IV-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2010년 기준) .....	16
<표 IV-2> 지방세 체납담당자 인력현황 및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 .....	17
<부표 1> 「공정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	31
<부표 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32

## I. 서론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 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 7천억원) 대비 6.9%에 달하였음<sup>1)</sup>
  -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2004년 3조 2,669억원에서 2008년 3조 4,09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2008년 기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 규모는 국세청 관할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 3조 9,080억원의 8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의 비율도 국세는 1.8%인 데 비해 지방세는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이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체납의 문제가 국세에 비해 지방세에서 더 심각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국 단위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과는 달리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할 구역을 벗어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구조상 체납징수 업무를 위한 행정인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1) 『지방세정연감』에는 ‘미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년도 발생 체납액 중 당해연도에 징수된 것은 미수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징수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미수액은 미정리 체납의 누적총액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미수액’을 ‘미정리 체납액’이라고 부름

- 전반적으로 미정리 체납건수를 고려할 때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세무공무원은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납세서비스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체납정리에 대한 집중도 및 효율성이 낮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최근에 국회에서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2010. 5.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위탁방안을 모색함
- 먼저 지방세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제Ⅱ장), 다른 국가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체납액을 축소한 사례를 검토함(제Ⅲ장)
  -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제Ⅳ장), 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정보 업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함(제Ⅴ장)
  -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여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지방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논의함(제Ⅵ장)

## Ⅱ.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 본 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있음
  -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세 및 다른 국가의 지방세 체납액과 비교하여 체납액의 규모를 평가함
  - 그리고 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세목별, 지역별 체납의 특성을 검토함
  
- 첫째,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규모면에서 2004년 3.3조원에서 2008년 3.4조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은 2004년 8.5%에서 2008년 6.9%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국세의 경우 동 비중이 2008년 기준 1.8%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방세 체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Ⅱ-1>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추이 비교 : 지방세 VS 국세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 방 세	부과액	383,470	399,867	453,509	476,118	497,316
	미정리체납액	32,669	32,012	32,634	32,134	34,096
	비 율	8.5%	8.0%	7.2%	6.7%	6.9%
국 세	부과액	1,560,651	1,675,520	1,808,073	2,076,466	2,299,547
	미정리체납액	43,114	47,516	44,386	38,952	41,820
	비 율	2.8%	2.8%	2.5%	1.9%	1.8%

주: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하고 있고, 국세에서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및 관세청 내부자료

- 둘째, 연도별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을 보면 2000년 83.9%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8년에는 91.5%가 됨
- 그러나 일본의 2008년 지방세 징수율이 94.8%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표 II-2>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정리 체납액 현황

구분	미정리 체납액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당금액 (천원)	건수비중 (%)	금액비중 (%)
지방세 전체	50,484,494	3,409,628	68	100	100
취득세	352,035	569,814	1,619	0.70	16.71
등록세	30,035	206,033	6,860	0.06	6.04
면허세	1,136,236	19,093	17	2.25	0.56
지역개발세	20,076	746	37	0.04	0.02
공동시설세	2,335,575	58,986	25	4.63	1.73
지방교육세	19,822,515	297,844	15	39.26	8.74
주민세	8,712,855	992,604	114	17.26	29.11
재산세	4,624,502	289,353	63	9.16	8.49
자동차세	9,345,996	782,273	84	18.51	22.94
농업소득세	78	19	247	0.00	0.00
도축세	155	877	5,660	0.00	0.03
담배소비세	28	2,948	105,291	0.00	0.09
종합토지세	431,349	44,085	102	0.85	1.29
주행세	19	115	6,062	0.00	0.00
도시계획세	3,638,003	131,018	36	7.21	3.84
사업소세	35,037	13,818	394	0.07	0.41

주: 주행세의 경우 현년도분 미정리 체납건수는 0으로 기록되었지만 체납금액은 존재하는 오류가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셋째, 미정리 체납액의 세목별·지역별 분포를 보면 특정 세목과 특정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이들 세목과 지역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말 기준 미정리 체납된 지방세의 금액(3.4조원)과 건수(5천만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일부 세목의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함(<표 II-2> 참조 바람)
  - 미정리 체납금액 기준, 주민세의 비중이 29.1%(9,926억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 22.9%(7,823억원), 취득세 16.7%(5,698억원) 순으로 나타남
    - 미정리 체납건수 기준, 지방교육세의 비중이 39.3%(1,982만건)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 18.5%(935만건), 주민세 17.3%(871만건) 순으로 파악됨
  - 미정리 체납건당 금액을 보면, 미정리 체납건당 금액이 가장 높은 세목은 담배소비세(건당 1억 5백만원)이고, 그 다음으로 등록세(680만원), 주행세(610만원), 도축세(570만원), 취득세(160만원)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담배소비세, 등록세, 주행세, 도축세와 같이 체납 건수가 많지 않은 세목에서 건당 체납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말 기준 미정리 체납된 지방세 3조 4천억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9,879억원, 29.0%), 서울(8,297억원, 24.3%), 경상남도(2,108억원, 6.2%) 순으로 집계됨(<표 II-3> 참조)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미정리 체납규모는 1조 9,82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58.1%를 차지함

<표 II-3> 2008년 지역별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 현황

구분	미정리 체납			
	금액 (십억원)	금액비중 (%)	건수 (건)	건수비중 (%)
전국	3,409.6	100.0	50,484,494	100.0
서울	829.7	24.3	4,242,336	8.4
부산	192.3	5.6	3,692,670	7.3
대구	172.5	5.1	2,711,351	5.4
인천	164.4	4.8	3,090,370	6.1
광주	75.6	2.2	1,475,828	2.9
대전	75.9	2.2	1,007,336	2.0
울산	74.7	2.2	902,482	1.8
경기도	987.9	29.0	11,979,356	23.7
강원도	99.4	2.9	2,296,224	4.5
충청북도	60.5	1.8	1,126,838	2.2
충청남도	129.5	3.8	2,948,886	5.8
전라북도	72.9	2.1	4,321,679	8.6
전라남도	82.5	2.4	1,631,040	3.2
경상북도	157.7	4.6	4,363,177	8.6
경상남도	210.8	6.2	4,252,881	8.4
제주도	23.2	0.7	442,040	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액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2008년도에 결손 처리한 체납액은 8,423억원인데, 그 중 대부분은 과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지만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결손 처리한 부분도 23.5%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당해연도 체납의 결손 처리가 가장 많은 세목은 주민세로서 전체의 62.7%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의 순임
  - 지역별로 보면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결손처리도 많아서 2008년 불납결손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2.2%였음

<표 II-4> 2008년도 지방세 세목별 불납결손액 현황

구분		불납결손	
		금액 (십억원)	비중 (%)
합계	소계	842.3	100.0
	현년도	197.6	23.5
	과년도	644.7	76.5
현년도분 불납결손액의 세목별 분포			
	주민세	123.9	62.7
	등록세	19.9	10.1
	취득세	16.7	8.5
	자동차세	12.6	6.4
	지방교육세	9.5	4.8
	재산세	8.5	4.3
	기타 세목	6.5	3.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II-5> 2008년 지역별 지방세 불납결손액 현황

구분		불납결손	
		규모 (십억원)	비중 (%)
전국	합계	842.3	100.0
	현년도	197.6	100.0
서울	합계	315.1	37.4
	현년도	112.8	57.1
부산	합계	54.0	6.4
	현년도	20.3	10.3
대구	합계	17.2	2.0
	현년도	0.2	0.1
인천	합계	35.0	4.2
	현년도	1.7	0.8
광주	합계	43.7	5.2
	현년도	1.6	0.8
대전	합계	20.8	2.5
	현년도	6.0	3.0
울산	합계	16.2	1.9
	현년도	0.4	0.2
경기도	합계	173.8	20.6
	현년도	27.4	13.9
강원도	합계	25.9	3.1
	현년도	4.7	2.4
충청북도	합계	15.4	1.8
	현년도	4.7	2.4
충청남도	합계	22.0	2.6
	현년도	5.1	2.6
전라북도	합계	16.3	1.9
	현년도	4.5	2.3
전라남도	합계	13.9	1.7
	현년도	1.7	0.9
경상북도	합계	34.1	4.0
	현년도	3.1	1.6
경상남도	합계	32.1	3.8
	현년도	2.3	1.2
제주도	합계	6.8	0.8
	현년도	1.0	0.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Ⅲ. 체납징수 민간위탁 해외사례

-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 있음
  - 우선 미국의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의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해 검토함
  - 그 다음, 일본의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봄
  - 이 밖에도 미국 국세청(IRS)이 시행하였던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사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위탁 사업의 차이점을 비교함
  
- 첫째, 민간위탁의 시행 과정과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주정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음
  -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일반적인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음
  - 세금뿐만 아니라 주립대학 수업료, 수수료, 벌금·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개별 부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
  -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3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민간개방 3개년 계획에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도입됨
    -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의 확대를 위한 징세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결합되어 민간위탁이 시작됨
  - 일본은 민간위탁이 아직 초기 단계로서 민간부문이 콜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 둘째, 민간에 위탁되는 채권의 특성을 보면, 일단 세목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별한 제약이 없음
  - 미국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주립대학 수업료, 수수료, 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징수하는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은 대체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징수되지 않은 채납채권의 징수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함
  - 한편 일본은 징세공무원 업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 채권에 한하여 채납 초기 단계에서 전화연락 등을 통해 채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세금의 납부를 독려하는 수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 그 외의 모든 채납징수 업무를 세무 공무원이 담당함
  
- 셋째, 위탁의 방식에 있어 미국은 민간 추심업체를 선정하여 채납자의 거소지 추적, 납부 독려, 채납자의 재산정보 조사, 채납자에게 분할납부 설정 제안 등의 업무를 위탁하며, 민간업체는 외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
  - 채납업체는 징수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으며, 징수액이 증가하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함
  - 정부가 징수하지 못하는 채권의 회수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위탁된 업무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며, 1차 위탁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하지 못한 채권은 다른 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로 위탁하기도 함
  -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내에 콜센터를 두고 민간 채납업체 직원이 그 콜센터에 나와서 전화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실상 채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민간업체 직원의 파견을 받아서 활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넷째, 민간위탁 업무의 제약을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률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정해진 세금의 징수업무를 포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지는 않음
  - 즉, 세액의 결정 및 징수, 압류, 세금의 면제, 분할납부에 대한 결정 등 징세 공무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으며,
  - 체납사실의 통보, 재산의 조사, 납부 독려 등 사실 행위에 국한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짐
  - 위탁을 받은 민간 추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체납징수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징수, 납세자 정보보호를 비롯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 등 징세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을 받음
  
- 다섯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이 납세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징수업체의 활동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함
  - 미국 메릴랜드 주의 사례를 보면 민간 징수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주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업체의 추심행위와 관련된 지침서(manual)를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에서는 추심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조세 체납징수 담당자가 다른 업무 담당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외부로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지, 각 추심회사의 지침서가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함
  - 일본의 경우 정부 청사 내에 콜센터를 두고 사후관리보다는 출입시 정보 유출 여부 점검, 전화통화 시간 통제, 민간업자의 개별적인 납세자 방문 금지 등 불만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마지막으로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지방정부 사례에서 모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민간업체에 비해 우월한 정보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수하기에 경제적이지 못하였던 조세채권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함
    - 주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을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통하여 징수하므로 세수입 증대가 이루어짐
  - 일본은 2005년에 최초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오오사카 현 사카이 시의 경우 2005년에 민간위탁 대상인 10만엔 미만의 체납자가 29,000명이고 체납액은 6억 8천만엔 정도였는데, 5개월간의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2억 6천만엔을 징수함
    - 이는 이전 징수실적의 2배에 달하는 성과임
  
- 한편 미국 국세청은 2006년부터 3년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가 중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직접 징수가 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 미국 국세청(IRS)의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2008년 의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IRS의 자동징수 프로그램인 ACS(Automated Collection System)의 체납액 징수율이 민간위탁의 경우보다 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이를 근거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체납 계정에 대한 IRS의 조기 개입이 민간 위탁보다 체납징수 실적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한편 IRS가 2009년 발표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에서도

2) 이런 수치는 IRS의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이 완성되기 전 중간단계에서 TAS(Taxpayer Advocate Service)가 입수하여 인용한 것임

IRS의 자동징수 프로그램(ACS)이 민간위탁 프로그램(PDC)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남

- IRS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체납 사건을 추출한 후 무작위로 ACS와 PDC로 배치한 후 처리 결과를 비교 분석한바, ACS의 체납액 징수율은 11.4%인 반면 PDC의 체납액 징수율은 3.8%로 ACS의 1/3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특히, IRS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2009년 체납징수 업무의 위탁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됨

□ 미국 IRS의 비용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요소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IRS가 초기 단계에 수행하는 자동징수 프로그램과 민간위탁을 통한 징수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임

- IRS는 자원의 한계상 체납처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체납 계정부터 직접 정리하고, \$100,000 미만의 소액 체납사건은 대체로 민간회사에 위탁하였음

- 반면, 미국 주정부들의 사례처럼 정부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난 후에 정리되지 않은 체납 세금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음

-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체납징수 과정을 거친 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는 IRS의 비용효과성 분석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이 경우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체납징수와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징수는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징수 요원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을 때와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때 성과(생산성) 차이임

- 징수 요원의 급여와 민간위탁 수수료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직접 징수 요원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징수 요원이 공공부문에 고용되면 고용의 안전성, 성과 인센티브 부

- 족 등의 이유로 민간 기업에 고용되었을 때보다 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큼
- 이에 덧붙여서 미국 IRS의 경우 1996년 시범사업의 실패 경험<sup>3)</sup>으로 인해 민간 위탁 프로그램(PDC)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였고 이는 민간 위탁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임
    - 2008 회계연도의 경우 동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11.2백만달러에 달하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27.7백만달러)의 약 40.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 프로그램의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6.1백만달러)의 약 1.8배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sup>4)</sup>
  - 마지막으로 IRS가 주정부의 민간위탁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은 위탁 수수료율을 지급한 것도 IRS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3) 미국 IRS는 1996년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납세자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행 1년 만에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음

4) 비 IT 종사직원(Non-IT Personnel) 관련 6.3백만달러, IT 비용(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원) 3.4백만달러, 기타 비용 1.5백만달러 등 총 11.2백만달러가 민간위탁 프로그램 비용으로 파악됨

## IV.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함
  - 우선 지방세 체납 현황을 근거로 징수율 제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 체납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함
  -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봄
  
-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부과액 중에서 미정리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5%에서 2008년 6.9%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국세에 비해서는 미정리 체납액의 비중이 상당히 크며 지방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지방세 징수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임
  - 징수율이 낮으면 세금의 공평성 및 조세정의가 훼손되며, 낮은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표 IV-1>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별 재정자립도 분포를 정리한 것인데,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약 44%이고, - 3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67%로 기초자치단체의 2/3 이상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개수	비중(%)	개수	비중(%)
합계	16	100	231	100
90 초과	0	0	0	0
80 초과 90 이하	1	6.3	1	0.4
70 초과 80 이하	0	0.0	4	1.7
60 초과 70 이하	2	12.5	9	3.9
50 초과 60 이하	4	25.0	13	5.6
40 초과 50 이하	1	6.3	25	10.8
30 초과 40 이하	1	6.3	32	13.9
20 초과 30 이하	5	31.3	48	20.8
10 초과 20 이하	2	12.5	90	39.0
0 초과 10 이하	0	0	9	3.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한편 지방세 체납징수 인력 현황을 살펴본바, 미정리 체납건수를 고려할 때 체납 징수 인력의 규모가 영세하여 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 전국적으로 지방세 공무원 중 체납담당자 비율은 23.7%로 조사됨(<표 IV-2> 참조)
    - 경상남도(12.9%), 부산(16.2%), 경기도(18.4%)는 체납징수 인력의 비중이 10% 대인 것으로 나타나 체납징수 조직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 서울(21.3%), 울산(21.6%), 전라남도(23.0%), 강원도(23.1%) 등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도(67.3%), 전라북도(32.7%), 충청북도(32.5%)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미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 3천 건 정도로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sup>5)</sup>이 6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5) 세무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을 2,000~2,300시간 정도로 가정하였음

- 특히 체납담당 인력의 비중이 낮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는 10만건을 초과하여 체납사건 1건당 물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2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이 처리해야 하는 연간 미정리 체납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
-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정 체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다수의 체납사건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표 IV-2> 지방세 체납담당자 인력현황 및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

(단위: 명, %, 건)

구분	지방세 공무원 ('10년 8월 현재)			미정리 체납건수 ('08년 말 현재)	체납 담당자당 미정리 체납건수
	전체	체납 담당자	체납담당자 비중		
합계	9,152	2,173	23.7	50,484,494	23,232.6
서울	1,774	377	21.3	4,242,336	11,252.9
부산	661	107	16.2	3,692,670	34,510.9
대구	449	127	28.3	2,711,351	21,349.2
인천	449	119	26.5	3,090,370	25,969.5
광주	68	20	29.4	1,475,828	73,791.4
대전	288	92	31.9	1,007,336	10,949.3
울산	199	43	21.6	902,482	20,988.0
경기	1,661	306	18.4	11,979,356	39,148.2
강원	415	96	23.1	2,296,224	23,919.0
충북	348	113	32.5	1,126,838	9,972.0
충남	515	139	27.0	2,948,886	21,215.0
전북	483	158	32.7	4,321,679	27,352.4
전남	565	130	23.0	1,631,040	12,546.5
경북	917	273	29.8	4,363,177	15,982.3
경남	311	40	12.9	4,252,881	106,322.0
제주	49	33	67.3	442,040	13,395.2

출처: 지방세 공무원 현황은 홍재형 의원실 질의사항에 대한 지방세 운영과의 답변 자료에서 얻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본고에서는 특별히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첫째, 공공부문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데 비해 민간 추심업체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및 고용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산성이 높음
  - 둘째, 민간 추심업체는 그동안 다양한 금융채권 추심을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추심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공무원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해당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며, 개별 자치단체의 징세조직 규모가 작고 체납 세금의 규모도 작아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음
  - 셋째,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채용하여 추심업무를 하는 것보다 추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하면 민간서비스 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은 개별 지방정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음
    - 작은 단위의 지방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 다른 지방으로 전파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세와 기타 공공채권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채납징수의 민간위탁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간 주심업체의 주심 과정에서 과세정보가 유출되거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미국과 일본에서는 엄격한 행동지침의 마련, 철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위탁을 시행해 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세하고 엄격한 행동지침을 통해 민간 주심회사 직원의 행위를 통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를 야기한 채권추심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벌칙을 마련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V. 민간부문의 채납징수 업무 수행능력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용정보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지방세 채납징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 신용정보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개관하고,
  - 현재까지 국내 신용정보업계의 채납징수 업무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함
  -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납징수를 위탁할 때에 우려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은 부실채권의 회수가 사회적 문제가 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발전하여 현재 35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27개 업체임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일반기업 등의 업무 위탁이 증가하며 크게 성장하였음
  - 대부분의 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 채권추심 전문성이 높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하여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자체인력 절감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부문의 구상권 행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제51조)

- 우리나라의 신용정보회사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채권추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2009년의 채권추심 실적은 10조 6,868억원에 달함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추심금액은 81조 6,676억원 수준임
  - 이러한 양적 팽창과 신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용정보회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채권추심 전문성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 전문인력은 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됨<sup>6)</sup>
  - 다수의 채권추심 회사들은 서울, 지방 광역시 및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채권 추심회사는 2009년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자는 12,359명임
  
-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sup>7)</sup>과 「공정추심법」<sup>8)</sup>등의 제반 법령에서 채권추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자격, 신용정보 수집·조사·처리하는 방식, 신용정보의 유통·이용·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공정추심법」에는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6) 동 수치는 신용정보협회에서 제공한 것임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리킴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가리킴

들이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채권추심업계는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0년 5월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법 및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업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해 2009년까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2009년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함
  -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 등이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자세하고 엄격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 비밀유지 규정이 체납세액 징수의 위탁을 받은 추심업 종사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추심업 종사자들도 징세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 VI. 민간위탁제도 도입 방안

-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여기서 바람직한 민간위탁제도란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우려되는 부정적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제도를 의미함
  - 먼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위탁의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 및 시행방안을 검토함
  -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봄
  
- 현행 법체계상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함
  - 특정한 정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탁에 관한 총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와 같은 구체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규정에 비취 볼 때, 체납징수 업무 중 법률행위 또는 강제적 체납처분이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 사실행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함
- 2010년 5월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기관 선정)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체납징수 업무를 대행할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징수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민간위탁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미국 국세청(IRS)의 사례나 메릴랜드 주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면 공신력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찰과정에서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 건

수 및 종사직원 규모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 (민간위탁 대상 조세채권 범위) 체납액이 많고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일반적인 소액 체납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 공무원이 일정기간 동안 독촉장 발송 등 독촉과 최고를 한 후 정리되지 않으면 바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위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세목을 특별히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기관의 징수활동 범위) 기본적으로 세금의 체납징수 업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시 그 활동범위에 대한 제약이 필요함
  - 민간위탁기관의 업무는 체납조세 징수업무 중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 사실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함
  - 압류, 가산금 부과, 몰수, 공매 등과 같은 강제재제 조치는 법률상 민간에 위탁할 수 없고, 세금감면, 가산금, 이자 등과 같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도 금지됨
  
- (적정 위탁 수수료 산정) 행정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를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위탁수수료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고, 민간위탁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

- 참고로 미국 국세청은 징수금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징수금액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 24%, 10,000달러 초과시에는 21%를 지급하였음
    - 민간에 위탁된 채납사건이라도 민간위탁회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징수활동을 통하여 채납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 미국 메릴랜드 주 Comptroller's Office의 경우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를 구분하여 1순위 업체에는 5.35%, 2순위 업체에는 9%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함
    - 연간 징수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백만달러마다 추가로 1%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지급함
  -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채권 추심에 대한 수수료율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15%의 범위 내에서 결정됨
-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채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채권추심회사 간에 과세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정기적인 보안감사 등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 지방세 채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가 성공하여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추심회사의 업무집행을 어떻게 감독하고, 감독기구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과도한 관리·감독은 민간위탁제도를 비효율적인 제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하여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납세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가 바람직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과도한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등 기존 법규에 더하여 2009년 8월 7일 「공정추심법」을 제정하여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이들 규정에 따르면 폭행·협박, 거짓 표시, 불공정한 행위, 부당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됨
  -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하기 바람
  
- 이러한 법률적 규제와 더불어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바탕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추심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추심업체 고용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 추심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에게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등한 의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 및 그 종업원에게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신용정보법」과 「공정추심법」상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수집·조사의 원칙(제15조), 신용정보 수집·조사의 제한(제16조),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제20조)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벌칙이 부과됨
  - 또한 「공정추심법」 제10조는 업무상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상 자신의 업무과 무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되어 있으므로 채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이 채납세액 징수의 위탁을 받은 추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채납세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VII. 결 론

-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행정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은 반면 체납 건수가 매우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로 인해 체납 세금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함
  
- 체납 세금을 방치하는 것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함
  -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할 때, 체납된 세금은 탈세된 세금과 마찬가지로 성실 납세자의 세부담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문제를 발생시킴
  
- 지방정부의 당면과제인 체납 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차선택 또는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사실행위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은 다양한 이점과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 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임

- 민간 추심회사의 전문성 및 성과보상 체계,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음
- 민간 추심회사를 활용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격 추심회사 선정, 수수료율 책정, 체납활동의 범위 등에 관한 지방정부와 민간회사 간의 합리적 계약이 중요함
- 또한 납세자의 비밀유지 및 권익보호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보완과 민간 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및 위탁기관의 합리적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요청됨

<부표 1> 「공정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벌 수준	처벌 대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 등의 금지(제9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li> </ul> </li> </ul>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 등의 금지(제9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li> <li>-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li> <li>- 금전의 차용 등의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li> <li>-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li> </ul> </li> <li>○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제10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li> </ul> </li> <li>○ 거짓 표시의 금지 등(제11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li> </ul> </li> </ul>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표시의 금지 등(제11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li> </ul> </li> </ul>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li> <li>-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li> </ul> </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 표시의 금지 등(제11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li> <li>-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li> <li>-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li> </ul> </li> <li>○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li> </ul> </li> </ul>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li> <li>- 법률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li> <li>-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li> </ul> </li> </ul>

<부표 2>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처벌 수준	처벌 대상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수집·조사의 제한(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li> </ul> </li> <li>○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 없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li> </ul> </li> </ul>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는 의뢰인에 관한 사항, 업무의 처리 내용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li> </ul> </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통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li> </ul> </li> </ul>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li> </ul> </li> </ul>